

울산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11913(본소), 2019나11920(반소) 판결 [할부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19. 9. 19.

판결 선고 2020. 1. 9.

제 1 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7가단66529(본소), 2018가단 66656(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1,935,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명의로 등록된 'E' 화물차량(현대메가윙바디,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에 종사해 왔는데 2014. 11. 하순경 피고를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배정하여 C가 지시·위탁하는, 즉 배차하는 화물운송을 담당하도록 배치하였다.

나. 그 후 2015. 3. 1.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E(현대 메가 윙바디)

매도자 : 원고

매수자 : 피고

위 차량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하기로 한다.

1. 차량대금은 총액 일억 삼천(130,000,000)으로 하기로 하며 매월 2,200,000원씩 60개월로 균등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초과납입은 인정하기로 하며 초과 납입한 금액은 차량 대금의 총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균등상환금액이 미납될 때에는 초과납입금으로 이를 보존하기로 하며 균등 상환금액이 3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할 수 없다.

1. 피고는 차량 운영시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 보험금, 수리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차량 운영에 따르는 모든 이익금을 가지게 된다.

1. 위 계약은 일방의 통지로 해지될 수 없으며 계약의 해지, 계약사항의 불이행시에는 이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기로 한다.

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과 이 사건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 등지출을 위한 D명의의 신용카드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등을 하던 중 2017. 7. 10.경 이 사건차량을 원고에게 반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8. 30.경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체결된 것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7.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격이 근로계약이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신용카드를 회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2017. 7.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을 일방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계약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1096 판결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7. 7. 1.경 C 배차과장 H에게 배차 거부의 의사표시를 밝혔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만나게 된 점, ② 피고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매매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임을 주장하며(피고는 제1심 판결 소송 계속 중에도 위와 같이 주장하다가 2018. 9. 3.자 준비서면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었던 점, ③ 피고로서는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신용카드의 제공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그럼에도 피고는 2017. 7. 10.경 원고의 신용카드를 회수를 문제 삼으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근로계약인데,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던 점, ⑤ 그 후 원고는 2017.

7.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어떠한 언동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에 대한 원고의 묵시적 해제의 의사표시로서 2017. 7. 12.경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용이익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1)

매매계약의 해제시 매수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매도인이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 생각되는 사용이익은 매수인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2015. 3.부터 2017. 6.까지 이 사건 차량의 운송매출액은 255,796,618원인 사실, ② 위 기간 이 사건차량 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카드 사용대금 139,594,581원(= 국민카드 사용대금 130,611,143원 + 신한카드 이용대금 8,983,438원) 및 차량 번호판 대여비 24,907,199원 합계 164,501,780원인 사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여 월 2,500,000원을 임금으로 지출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운전기사를 고용하는데 약 70,000,000원(= 2,500,000원 × 28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차량은 C 주식회사에서 의뢰한 물건의 운송 목적으로 이용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와 같은 차량 이용 방식에 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 매출액 역시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5. 3.부터 2017. 6.까지 이 사건 차량의 운송매출액에서 위 기간 차량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으로부터 당연히 취득할 수 있는 사용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계산하면 21,294,838원(= 매출액 255,796,618원 - 비용 164,501,780원 - 운전기사 고용비 7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사용이익 21,294,8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을 20,000,000원으로정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비용21,294,838원 및 위약금 20,000,000원 합계 41,294,83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7. 10.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얻은 수익은 모두 원고가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갖고, 이를 원고의 원상회복및 위약금 지급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행한 2015. 3.부터 2017. 6.까지 매출액이 255,796,61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경부터 2017. 6.경까지이 사건 차량 운행을 위하여 원고가 제공한 카드로 139,594,581원(= 국민카드 사용대금 130,611,143원 + 신한카드 이용대금 8,983,438원)의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차량 번호판 대여비 명목으로 유한회사 J에 24,907,199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71,630,020원(2016. 1.분 금액 중 F 몫인 2,300,000원 제외)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9,664,818원[= 매출액 255,796,618원 - 비용등 236,131,800원(= 139,594,581원 + 24,907,199원 + 71,630,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부당이득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8. 9. 4. 그 변제기가 도래한다).

다. 소결론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2018. 9. 4. 도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양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18. 9. 3.자 준비서면에서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원고의 원상회복 및 위약금 지급채권의 원금에 충당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원상회복 및 위약금 지급채권의 원금 41,294,838원과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원상회복 및 위약금 지급채권의 원금은 21,630,020원(= 41,294,838원 - 19,664,818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630,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선고일인 2020.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나,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이규봉, 판사 김혜인 휴가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약 해제시까지 할부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영하던 중 피고에게 '5년간 일하면 이 사건 차량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체결되었고(제1심 증인 F의 증언),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기존 거래처 등으로부터 직접 일을 맡아 처리하여 그 수익 중일부를 할부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외에도 이 사건 차량의 사용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할부대금 지급 청구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시까지 이 사건 차량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